

장기요양 기관의 어르신 급식을 공급함에 있어 “고성실버주간보호센터” (이하 “갑”이라 한다)와 엠앤에프(M&F)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장기요양기관 위탁급식 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효율적이고, 위생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갑”과 “을” 상호 간의 책임과 의무, 준수사항을 정하고 공정한 계약관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 ① “을”은 “갑”과 합의한 사항을 준수한다.
- ② “을”은 항상 신선한 재료를 위생적, 영양적으로 조리, 가공하여 어르신에게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급식 어르신 및 직원의 불만에 의해 “갑”으로부터 개선요구가 있을 때는 “을”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개선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 기간)

- ① 계약 기간은 2026년 5월 15일부터 202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 ② 전항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갑의 요청으로 계약을 만료할 수 있고 (계약의 내용은 변경할 수 있음),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쌍방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방법)

“을”은 어르신에게 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공급하여야 하며, 위생적이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 및 식단 구성)

- ① “을”은 식품 재료를 사용할 때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사용하며(식품의 안정성이 확보된 가공식품을 일부 사용 가능), 염분, 유지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 ②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급식내용은 국 외 찬 4가지 이상으로 한다.
- ③ “을”은 식단 내용과 영양란을 표시한 월간식단을 전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을”은 식품위생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시달하는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사고 책임)

- ①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사고가 “을”의 책임으로 발생한 때에는 치료비 및 기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② “갑”은 “을”이 공급한 음식물을 공급받아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갑”의 보관관리 등 부주의로 음식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01362
천현진
내동로 197
주식판매제조가공



③ “을”은 전 ①항의 규정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억 원 상당의 생산물배상,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급식 개시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급식 공급가격)전량급식

① 급식의 1식당 가격: 2640 원 39,600
부분급식(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② 1일 식수 인원

조식: 명 *죽(원): 명 *밥(원)

중식: 명 *죽(원): 명 *밥(원)

석식: 명 *죽(원): 명 *밥(원)

③ 계약 기간 중이라도 주·부식의 급격한 물가변동, 식수증감, 급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공급가격을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급식 대금의 정산)

① “을”은 “갑”에 대한 정산 해당 월의 급식 대금 청구서를 즉시 교부하고, “갑”은 급식 대금을 익월 5일까지 부가세를 포함하여 “을”의 사업용 계좌로 지급한다.

②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은 “갑”에게 통보 후 급식 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법정 이자) 및 제반 비용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합의하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계약 기간 중 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의 파산 등 납득 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급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등 법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을 명백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정부 시책 및 법규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위탁 급식이 불가하게 되었을 경우, 계약해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급식 대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급식중단 (10일전까지) 통보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경과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 양도)

“을”은 “갑”의 동의하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갑”과 “을”은 쌍방간의 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타목적 을 위하여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분쟁의 해결)

“갑”과 “을”은 분쟁이 발생 할 경우 우선 협의로서 해결하고, 협의가 불가하여 부득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그 관할은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년 5 월 5 일

“갑” 220-80-12209

고성 실버 주간보호센터

가 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220

(2.3.4층)

“을”

656-17-01362

엠에프(MRF) 원원전

경남 진주시 내동면 내동로 197

제 조 주식회사에프가공

1362

현전

내동로 197

에프가공

